

등록번호	시장경제과-11081
등록일자	2015.3.12.
결재일자	2015.3.13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★주무관	소비자보호팀장	시장경제과장	기획재정국장
장세복	조덕진	이재호	전결 03/13 박진석
협 조	가로환경과장 백기운		

위조상품 판매행위자에 대한 재정벌 강화계획



기획재정국
시장경제과

위조상품 판매행위자에 대한 재정벌강화 계획

상습적으로 적발되는 위조상품(짜퉁) 판매행위자에 재정벌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처리하고자 함.

■ 지시일자 및 내용

- 지시일자 : 2015.03.02.(확대간부회의시) 제27호-138번
- 지시내용 : 위조상품 단속시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짜퉁 판매자에게는 과태료 누증부과 등 재정벌 강화방안을 검토하기 바람

■ 현행법 처벌규정

- 「상표법」 제93조(침해죄) :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- 「상표법」 제97조2(몰수) :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은 몰수

■ 현행 위조상품 판매자 처벌내용

- 현행법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업주에게 행정벌(과태료) 처벌조항은 없으며,
- 대부분 약식기소 되어 형사처벌(대부분 벌금 100만원 ~ 300만원, 소수 징역형)과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 처분 받으며, 누범자에 대하여는 벌금액이 상향되거나 징역형이 구형되고 있는 추세임.

■ 검토결과

-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(2014.12.10.)에 구청장 참석 위조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건의결과
 - ☞ 동종전력이 있는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형 구형 (검찰청 관계기관 협의 완료, 2014.12.15.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통보)
- 위조상품 상습 판매 노점에 대하여는 가로환경과와 합동단속을 실시, 노점 철거 및 과태료 부과(제117조제1항) 병행
 - ☞ 도로법 시행령제105조(과태료 부과기준) 개정 과태료 상향건의(가로환경과). 끝.